###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34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서미화・박정현・조계원

윤종군 • 허성무 • 박지원

박해철 • 이용선 • 이기헌

김 윤 · 김문수 · 위성곤

김영환 • 윤건영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통계는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국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이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년 이상 국가인권통계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했음. 현재까지 작성·공표된 인권통계는 현행법 제19조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조문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나, 국가인권통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 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 9조의3 신설).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인권통계"란 국내 인권 상황과 그 변화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정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 보를 말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3(국가인권통계) ① 위원회는 국내 인권상황과 그 변화를 파악하고 인권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통계 작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통계 구축 및 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국가인권통계"란 국내 인권
	<u>상황과 그 변화를 분석·평가</u>
	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정하
	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
	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u> &lt;신 설&gt;</u>	제19조의3(국가인권통계) ① 위원
	회는 국내 인권상황과 그 변화
	를 파악하고 인권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인
	권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
	가인권통계 작성을 위하여 국
	<u>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u>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 • 단
	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
	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
	를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
	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 또

 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통계구축 및 조사 방법 등 필요한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